

- 해리면 동식물관련 시설 - 건축허가 특정감사 결과

1 감사 개요

- 감사기간 : 2024. 1. 17. ~ 1. 23.(5일간)
- 감사범위 : 2016. 11. 8. ~ 2022. 8. 8.
- 감사대상 : 해리면 ○○리 ○○ 일원 동식물관련시설 건축허가 관련 전반
- 관련부서 : 종합민원실 건축팀
- 감사반 : 감사팀장 등 2명

2 감사 중점사항

- 건축 인·허가 처리의 적정 여부

4 감사 결과

- 행정상 조치 : 2건 (주의 1건, 주의·통보 1건)
 - 건축(신축·추인)허가 부적정 (주의)
 - 건축(개축)허가 부적정 (주의·통보)
- 신분상 조치 : 주의 (관련자 4명)
 -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인한 '잘못된 건축허가'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“징계” 요구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나,
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징계의 시효 3년이 지남에 따라,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, 「공공감사기준」 제29조에 따라 “주의” 처분함.

[일련번호 : 1]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[제 목] 건축(신축·추인)허가 부적정

[관 계 기 관] 종합민원실

[행정상 처분] 주의

[신분상 처분] 주의

[현 황]

1. 허가번호 : 2017-종합민원과-신축허가-○○
2. 허가처리일 : 2017. ○. ○. (허가신청일 : 2016. ○. ○.)
3. 위 치 : 고창군 해리면 ○○리 ○○번지 외 ○○필지(○○㎡)
4. 허가내용 : 주○동, 부○동 / 건축면적 ○○㎡, 연면적 ○○㎡

[내 용]

1. 관계법령(판단기준)

「건축법」 시행령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“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”를 건축허가가 가능한“하나의 대지”로 간주하려면“동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”으로 건축허가를 하여야 한다.

2.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

그러나, 종합민원실 건축팀은 2017. ○. ○. ‘해리면 ○○리 ○○번지 일원’ 동식물관련시설의 건축(신축·추인)허가 처리 시 토지의 사용 승낙을 받은 ‘해리면 ○○리 ○○번지’ 토지의 분할을 건축허가 조건으로 붙이지 않고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다.

[처 분 요 구] 종합민원실장께서는

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해 관련법령 등에 대한
업무연찬과 더불어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.(주의)

[신분상 처분]

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(주의)

[일련번호 : 2]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[제 목] 건축(개축)허가 부적정

[관 계 기 관] 종합민원실

[행정상 처분] 주의·통보

[신분상 처분] 주의

[현 황]

1. 허가번호 : 2020-종합민원과-개축허가-○
2. 허가처리일 : 2020. ○. ○. (허가신청일 : 2020. ○. ○.)
3. 위 치 : 고창군 해리면 ○○리 ○○번지 외 ○○필지(○○m²)
4. 허가내용 : 주○동, 부○동 / 건축면적 ○○m², 연면적 ○○m²

[내 용]

1. 관계법령(판단기준)

「건축법」 제11조제11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,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해야 한다.

2.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

그러나, 종합민원실 건축팀은 2020. ○. ○. ‘해리면 ○○리 ○○번지 일원’ 동식물관련시설의 건축(개축)허가 처리 시 건축주가 ‘해리면 ○○리 ○○번지’ 토지의 소유권 내지 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다.

[처 분 요 구] 종합민원실장께서는

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해 관련법령 등에 대한
업무연찬과 더불어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라며,(주의)

잘못된 건축허가에 대한 사용승인 시 국민의 권익 침해의 우려가 있는
바,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.(통보)

[신분상 처분]

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(주의)